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1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박 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제정·시행되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단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 상충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가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생략)</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 9. (생략)</p>	<p>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p> <p>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